

2018년도 의사 국가시험 종합안내서

2018. 8



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시험평가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목 차

1. 시험개요	1
2.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2
<input type="checkbox"/>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2
<input type="checkbox"/> 외국대학 졸업자 안내	4
<input type="checkbox"/> 응시원서 접수안내	7
<input type="checkbox"/> 응시취소 신청	10
3. 출제정보	12
<input type="checkbox"/> 실기시험	12
<input type="checkbox"/> 필기시험	16
4. 시험시행	19
<input type="checkbox"/> 실기시험	19
<input type="checkbox"/> 필기시험	22
5. 합격자발표	26
6. 면허증 발급	27
7. 기타	30
<input type="checkbox"/> 증명서 발급 안내	30
<input type="checkbox"/> 답안카드 열람 안내	31
<input type="checkbox"/> 응시확인서 안내	32
<input type="checkbox"/>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32
<input type="checkbox"/> 의사 국가시험 분석결과	32

1. 시험개요

□ 2019년도 제83회 의사 국가시험

의사 국가시험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개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만 최종합격자로 결정

구분		실기시험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	•인터넷접수 : 2018.7.30.(월)~8.03.(금)	•인터넷접수 : 2018.10.11.(목)~18.(목)
	응시 수수료	•620,000원	•287,000원
	장소	•인터넷접수 : 국시원 홈페이지 [원서접수] 메뉴 다만, 외국대학 졸업자로 응시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또는 의사 국가시험 면제시험 포기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국시원 별관(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고객센터 로 방문하여 포기각서 작성 후에 접수하여야 함 •접수시간 : (인터넷 접수)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응시표 출력기간		2018.8.21.(화) ~ 응시자별 시험일	시험장 공고일(2018.12.5.(수)) ~ 시험일
시험시행	일시	2018. 9. 10(월) ~ 11.28(수), 51일간 ※시험종료일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가능	2019. 1. 10.(목) ~ 11.(금)
	장소	국시원 본관(청사 내 의사실기시험센터)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 [시험안내 홈]-[시험장소]-[진행중인 직종(의사)]메뉴 참고
	응시자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가운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지참(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식수(생수)는 제공하지 않음
합격자 발표*	일시	2018. 12. 21.(금) 예정*	2019. 1. 24. (목) 예정*
	방법	•시험안내 홈페이지 [합격조회] 메뉴 •자동응답전화 : 060-700-2353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통보	

* 제83회 의사 국가시험부터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합격자발표를 분리해서 시행하므로 일정을 반드시 확인

2.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 응시자격

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의료법 제5조, 동법 부칙(법률 제8366호, 2007.4.11.) 제9조 또는 동법 부칙(법률 제1152호, 2012.2.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규정하며 결격사유는 동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응시자격 : 의료법 제5조

(1)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4. 94. 7. 8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 대학 졸업자로서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2) 의료법 부칙 (법률 제11252호, 2012.2.1) 제2조(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평가인증기구가 해당 과목을 전공하는 모든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목의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과목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결격사유 등 : 의료법 제8조, 제10조

(1)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다.

2.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응시자나 국가시험 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3.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다음에 치러지는 2회의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다.

□ 외국대학 졸업자 안내

외국의 대학을 졸업한 자 중 최초로 인정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국시원 고객지원센터에 외국대학 인정심사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대학 인정심의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 단, 보건복지부 인정을 받은 외국대학 졸업자는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접수하여 응시 가능

※외국대학 인정 여부는 고객지원센터(02-2251-6286)에 문의 요망

응시자격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한 국가의 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1994. 7. 8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그 해당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외국대학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절차



외국대학 인정심사

- 신청기한 : 5월 31일 (마감일 국시원 우편 도착분 유효)
- * 외국대학 인정심사 신청안내는 매년 2월경에 국시원 홈페이지 : [고객센터]-[공지사항]에 공지
- * 매년도 공지 시마다 마감일은 변동이 있을 수 있어 해당 공지사항을 확인
- 제출서류(각 1부)

제출서류	아포스티유(Apostille) ※ 협약 가입국에 한함	번역·공증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
외국대학 인정신청서		
외국대학 기초현황표		
면허증사본	○	○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	○
성적증명서	○	○
교과과정표(curriculum)		○
교수요목(syllabus) (이수한 전공과목에 대한 교육목표, 학습내용, 수업시간 포함)		○
학칙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한 규정, 특별과정 및 특별반에 관한 규정,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포함)		○
학교 안내서 (전임강사·교수 현황, 실습시설 현황)		○
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기간 중이었던 기간의 출입국 사실 확인)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기타 응시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의 경우,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으로 아포스티유 대체 가능
- * 원본서류가 영어인 경우 번역·공증을 생략하고 제출 가능
- * 자세한 문의사항은 02-2251-6286
또는 국시원 홈페이지 [고객상담]-[질의응답] 으로 문의

참고사항

- 다음의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소재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외국대학 졸업자는 면허증사본, 학위증사본, 성적증명서 서류를 해당국가 외교관할행정기구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대학인지 여부는 02-2251-6286으로 개별문의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2018.06.07. 기준)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 대양주 (18개국)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유럽 (52개국)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1개국)	미국
중남미 (29개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볼리비아, 과테말라
아프리카 (12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튀니지
중동 (4개국)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 응시원서 접수 안내

인터넷 접수



인터넷 접수 대상자

- 졸업예정자 명단에 등록 후, 응시자격이 확인된 인원은 인터넷 접수 가능
- 과거 응시자격을 인정받아 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있는 자
-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 회원가입 등

-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
- 연락처 : 연락처1(휴대전화번호), 연락처2(자택번호), 전자 우편 입력
- ※ 휴대전화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

- 응시원서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

-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NICE신용평가정보(1588-2486, <http://www.idcheck.co.kr>)에 문의)
- 공지사항 확인 : 원서접수 내용은 접수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결제하기]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중 선택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접수결과 확인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 영수증 발급 : <http://ecredit.uplus.co.kr> [거래내역 조회]에서 열람·출력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 메뉴
-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 수정 가능 범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응시원서 접수기간~시험장소 공고 7일 전 : 응시지역
- 마감~시행 하루 전 :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학과명 등
-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와 주민등록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참고)

응시표 출력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응시표출력]
- 기간 : 시험장 공고일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방문접수



- 의사 국가시험 면제시험 포기자 (지난 회차의 합격한 시험의 면제를 포기하는 자)는 접수기간 내에 국시원 별관 고객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면제시험 포기 서약서(국시원에서 배부)'를 작성한 후 원서를 접수해야 하므로 본인이 필히 방문

(별관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
- 마감 안내 : 방문접수 기간 18:00시까지(마지막 날도 동일)

원서 사진 등록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 ※ 면허 사진 변경 : 면허교부 신청 시 변경사진,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

응시취소신청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 [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에서 로그인 및 본인인증 후에 신청

방문, 우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팩스 : 02-2251-6308

제출서류 :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 신분증 사본, 추가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제출

환불신청 마감일

인터넷 신청 : 환불기준 종료일까지

방문 신청 : 환불기준 종료일 근무시간(18:00)까지

우편 신청 : 환불기준 종료일 도착분까지

팩스 신청 : 환불기준 종료일 도착분까지

※ 환불 신청기한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함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은 사유별, 신청기한별로 다르므로 환불사유에 따른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환불신청

환불금액	사유	신청기한	제출서류
응시수수료의 100%	접수마감일 후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후 7일까지	-
	졸업탈락 또는 교육시간 미이수 공문이 접수되는 경우	시험일 10일 전까지	졸업탈락·교육시간 미이수 공문 또는 확인서
	결격사유조회, 이수교과목 확인, 경력 확인 등을 통해 응시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시험일 전일까지	-
	시험일 이전 본인의 군입대	시험일 후 30일까지	입영통지서
	본인, 형제, 자매, 자녀의 결혼		가족관계증명서류 또는 결혼증명서류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입퇴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시험일 이전 7일 이내 본인 또는 가족의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류 또는 사망진단서
	천재지변 또는 국시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이 외에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별안내		
응시수수료의 60%	응시수수료의 100%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접수마감일 후 8일 ㄹ부터 시험일 20일 전까지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을 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응시수수료의 100%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60% 환불기간 경과 후부터 시험일 10일 전까지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을 한 경우		

※ 국시원의 귀책사유

-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국시원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출제정보

□ 실기시험

출제문제수, 배점 및 시험시간

구분	출제문제수	배점		시험시간(1문제당)
		1문제당	만점	
계	12문제	-	900점	-
진료문항	6문제	100점	600점	10분(사이시험 5분 별도)
수기문항	6문제	50점	300점	5분

문항유형 및 평가내용

문항유형	평가내용
진료문항(Patient encounter)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수기문항(Procedure skills)	기본 기술적 수기

<용어정의>

진료문항(Patient encounter)

표준화환자를 대상으로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교육, 환자의사관계 등 진료 전반에 걸친 임상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수기문항(Procedure skills)

임상 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 기술적 수기 능력 등을 평가하는 문항

사이시험(interstation test)

진료문항 응시 후 환자면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진단가설과 향후계획을 작성하는 시험

표준화환자(standardized patient)

실제 환자처럼 연기하고, 응시자의 지식, 태도 및 수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훈련된 환자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평가항목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평가항목이 공지되어 있으며, 진료문항 54개 항목, 수기 문항 32개 항목 범위 내에서 출제되며, 응시자는 각 진료문항 6개, 수기문항 6개를 번갈아가며 총12개의 문제에 응시하게 됨

<진료문항 평가항목>

항 목 명	
1. 쉽게 멍이 듦	2. 수면장애(sleep disturbance)
3. 불안	4. 음주 문제
5. 기분 변화(mood change)	6. 나쁜 소식 전하기
7. 가정 폭력	8. 물질 오남용
9. 가슴 통증	10. 실신
11. 두근거림	12. 고혈압
13. 기침	14. 호흡곤란
15. 객혈	16. 콧물/코막힘
17. 복통	18. 소화불량
19. 혈변	20. 변비
21. 설사	22. 토혈
23. 황달	24. 구토
25. 유방통/유방덩이	26. 이상 지질혈증(dyslipidemia)
27. 다뇨증	28. 핏뇨
29. 체중 증가	30. 관절 통증
31. 허리 통증	32. 목 통증(neck pain)
33. 배뇨 이상	34. 붉은색 소변
35. 소변짚끔증	36. 예방접종
37. 피로	38. 발열
39. 체중 감소	40. 금연 상담
41. 산전 진찰(antenatal care)	42. 질 분비물
43. 월경이상	44. 성장/발달 지연
45. 경련	46. 두통
47. 의식장애	48. 팔다리 근력 약화 및 감각 이상
49. 손 떨림증	50. 기억력 저하
51. 피부 발진	52. 어지럼
53. 자살	54. 성폭력

<수기문항 평가항목>

항 목 명	
1. 단순 흉부엑스선 프레젠테이션	2. 혈액배양을 위한 채혈
3. 정맥혈 채혈	4. 동맥혈 채혈
5. 척추 천자(뇌척수압력 측정, 뇌척수액 채취)	6. 자궁경부 퍼바름 검사
7. 질 분비물 검사(wet smear)	8. 심전도 검사
9. 이경 검사	10. 안저 검사
11. 혈압 측정	12. 항문 직장 진찰
13. 뼈관절 부목고정	14. 기본 심폐소생법
15. 봉합술	16. 정맥주사
17. 안전수혈술기	18. 주사(피하, 피내, 근육)
19. 상처드레싱(상처소독)	20. 화상드레싱
21. 국소마취	22. 농양 절개 배농술
23. 정상 분만(분만진행단계진찰)	24. 심장전기충격요법 (cardiac electric shock therapy)
25. 도뇨관 삽입(남, 여)	26. 기관삽관법
27. 이물질 기도폐색 응급처치	28. 동의서 받기
29. 환자상태 보고	30. 시력검사
31. 무균가운과 장갑 착용	32. 기관내 흡인(endotracheal suction)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평가목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평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차진료의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핵심 역량(minimal core competency)'을 임상 표현별로 수행과정 중심으로 기술

[의사 국가시험 \[실기\] 평가목표집](#)

의사 실기시험 환자의사관계(PPI) 채점 항목

번호	채 점 항 목	평가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1	효율적으로 잘 물어 보았다. - 효율적 질문 : 개방형 질문 사용, 확인, 중간 요약 - 피할 질문 : 유도 질문, 복수 질문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2	나의 말을 잘 들어 주었다. - 대꾸하기, 경청 자세, 눈 맞춤 & 말 가로채지 않기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3	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 공감 표현, 나의 입장 파악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4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 간단명료함, 이해도 점검, 질문 기회 & 쉬운 용어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5	나와 좋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려고 했다. - 자기소개, 일상 대화, 존중, 자신감 & 신뢰감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의사 실기시험 환자의사관계(PPI) 신체진찰 태도 채점 항목

번호	채 점 항 목	평가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1	신체 진찰 태도가 좋았다. - 손 위생, 가려주기, 사전설명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 필기시험

시험문제수, 배점 및 시험시간

구분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응시자 입장시간	시험시간	1문제당 배점
제1일	1	1. 보건의약관계법규(20) 2. 의학총론 (60)	08:30	09:00~10:40 (100분)	1점
	2	1. 의학각론1 (70)	11:00	11:10~12:40 (90분)	1점
	점심시간 12:40 ~ 13:40 (60분)				
	3	1. 의학각론2 (70)	13:40	13:50~15:20 (90분)	1점
제2일	4	1. 의학각론3 (70)	08:30	09:00~10:30 (90분)	1점
	5	1. 의학각론4 (34) 2. 의학각론5(R형)(36)	10:50	11:00~12:30 (90분)	1점

시험과목 및 문제형식

시험과목	문제수(총점)	문제형식
<p>가. 의학총론(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성장 및 노화, 질병의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단, 검사, 치료와 합병증,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보건의료관리를 말함)</p> <p>나. 의학각론(영양, 소화기 질환, 손상·중독, 신생물, 혈액·조혈 기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 및 기생충 질환, 내분비·대사성 질환, 신장·요로 및 남성생식기 질환, 유전 질환과 선천성기형, 주산기 및 신생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귀 및 유양돌기 질환, 피부질환, 여성생식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기 질환, 정신 질환을 말함)</p> <p>다. 보건의약관계법규(「보건의료기본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검역법」·「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함)</p>	<p>360문제(360점) 의학총론(60) 의학각론(280) 보건의약관계법규(20)</p>	<p>객관식 5지선다형 및 R형</p>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평가목표

필기시험 평가목표는 의사 국가시험의 충실성과 질을 높이기 위하여 환자와 의사가 만나는 ‘의사 직무상황(physician encounter, PE)’을 중심으로 의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역량 (minimum competence)을 기술.

*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2014년에 개발하였으며, 2018년도 제82회 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

[의사 국가시험 \[필기\] 평가목표집](#)

□ 필기시험 예시문항

1. 임신 38주인 28세 미분만부가 3,600 g 남아를 흡입분만하였다. 2시간 후 신생아의 오른쪽 두피에 부종이 관찰되었고, 뇌컴퓨터단층촬영에서 오른쪽 마루뼈(parietal bone)와 뼈막 사이에 혈종이 보였다. 진단은?

- ① 산류(caput succedaneum)
- ② 머리혈종(cephalhematoma)
- ③ 경질막바깥혈종(epidural hematoma)
- ④ 거미막밑혈종(subarachnoid hematoma)
- ⑤ 머리덮개혈관종(scalp hemangioma)

2. 21세 여자가 어제부터 다리가 마비되어 걸을 수 없게 되어 병원에 왔다. 1년 전 오른쪽 눈이 일주일 동안 잘 보이지 않았고, 오른쪽 손이 한 달간 저린 적이 있었다. 안저검사서 오른쪽 시신경 위축이 관찰되었다. 양측 하지 근력은 2등급(grade II), 깊은힘줄반사는 (+++/+++) 이었고, 양발에서 바빈스키 징후가 관찰되었다. 감각검사서 배꼽 이하로 통각 및 진동각이 감소되었다. 진단은?

- ① 다발경화증
- ② 선천근육퇴행위축(congenital muscular dystrophy)
- ③ 중증근무력증
- ④ 길랭-바레증후군
- ⑤ 근육위축가쪽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 각 문제(3~4)에서 가능성이 큰 진단명을 문제마다 지시하는 수만큼 답가지 (①~⑨) 중에서 고르시오.

- | | |
|---------------|----------------|
| ① 면역글로불린A콩팥병증 | ⑥ 미세변화콩팥병 |
| ② 고혈압콩팥굳음증 | ⑦ 다발골수종 |
| ③ 국소조각토리굳음증 | ⑧ 사슬알균감염후토리콩팥염 |
| ④ 급성사이질콩팥병 | ⑨ 막토리병증 |
| ⑤ 기립단백뇨 | |

3. 45세 남자가 소변에 거품이 있어 병원에 왔다. 2주 전부터 다리가 부었고 걸을 때 숨이 찼다고 하였다. 체중이 3kg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양 다리에 오목 부종이 관찰되었다. 혈압은 140/90 mmHg이었다.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세 가지).

<p>혈액: 혈색소 15.0 g/dL, 혈액요소질소/크레아티닌 12/0.7 mg/dL 총 단백질/알부민 5.0/2.2 g/dL, 총 콜레스테롤 320 mg/dL 소변: 잠혈 (±), 단백질 (4+), 적혈구 1~3/고배율시야, 단백질 600 mg/dL, 크레아티닌 70 mg/dL</p>
--

4. 65세 남자가 소변에 거품이 있어 병원에 왔다. 두 달 전부터 다리가 부었고, 쉽게 피곤해졌으며 걸을 때 숨이 찼다. 체중이 3 kg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혈압은 120/70 mmHg이었다.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한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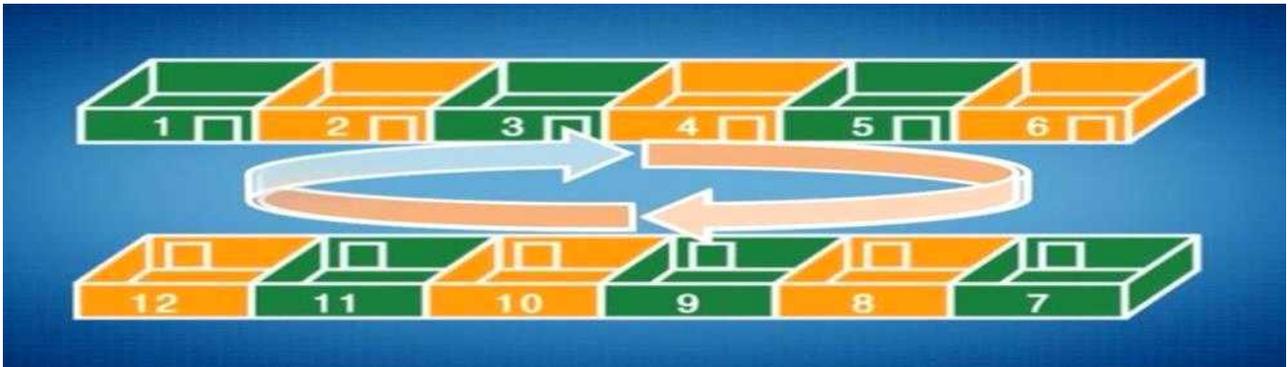
<p>혈액: 혈색소 9.0 g/dL, 혈액요소질소/크레아티닌 25/2.0 mg/dL 총 단백질/알부민 9.0/3.8 g/dL, 총 콜레스테롤 150 mg/dL 소변: 잠혈 (+), 단백질 (±), 적혈구 3~5/고배율시야, 단백질 300 mg/dL, 크레아티닌 70 mg/dL</p>
--

4. 시험시행

□ 실기시험

시험방법

- 응시자는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까지 준비물을 지참하고 의사 실기시험장(국시원 본관 건물 1층 현관)에 입장해야 하며, 본인확인 절차 후 응시자 대기장소로 이동하여 시험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시험실에 입실
- 응시자는 정해진 시험 시작 및 종료 신호에 따라 12개의 시험실을 이동하면서 각 시험실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평가자는 응시자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
 - * 각 시험실에서 중도퇴실 및 시험을 종료한 응시자는 해당시험실 재입실 불가



시험시간표

응시자는 반드시 본인이 응시하여야 하는 배정된 시험일의 해당 사이클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시험시간표 참조)까지 의사 실기시험장에 입장을 완료하여야 하며, 입장 완료시간 이후에는 시험장 입장이 절대 허용되지 않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구분	응시인원(하루 기준)	사이클(Cycle)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	시험시간
월요일	48명	2	12:00	12:35 ~ 15:12
		3	15:00	15:35 ~ 18:12
화요일 ~ 금요일	72명	1	08:25	09:00 ~ 11:37
		2	12:00	12:35 ~ 15:12
		3	15:00	15:35 ~ 18:12

- *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은 응시자가 의사 실기시험장(국시원 본관 건물 1층 현관)에 입장을 완료해야 하는 시간이며, 입장 완료시간 이후에는 시험장에 입장할 수 없으므로 결시 처리함.
- * 실제 접수결과(응시인원)에 따라 월요일에도 3개의 사이클을 시행할 수 있음.

실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까지 준비물을 지참하고 의사 실기시험장(국시원 본관 건물 1층 현관)에 입장을 완료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 가운
- 응시자는 사전 선택을 통해 배정된 시험일자 및 사이클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정해진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 이후에는 시험장에 입장할 수 없으며, 결시 처리
- 신분증 및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나,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 가능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유효기간 내의 임시운전증명서), 여권(만료일 이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종류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이시험은 전산입력(컴퓨터 자판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답안을 입력) 방식으로만 운영. 단, 장애 또는 사고 등으로 전산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자 본인이 자신의 시험 1일 전까지 우리원 홈페이지 ‘시험관리 편의제공대상자 신청 안내’를 참고하여 종이시험지 응시를 신청 가능

< 사이시험에서 종이시험지 응시자 유의사항 >

- 답안지에 응시번호, 성명 등을 기재 또는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사이시험 답안지를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두 줄을 긋고 재 작성합니다.
- 사이시험 답안지 작성은 검정색 필기구(국시원 제공)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한 경우 해당 사이시험 답안지는 “0점” 처리합니다.

-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전자기기(휴대전화기, 스마트워치, 전자사전 등) 및 개인 휴대물품(손목시계, 장신구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시험 종료 타종 후에도 퇴실을 하지 않거나, 사이시험 답안을 계속하여 작성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0점” 처리
- 시험 종료 후에는 시험장에서 지급된 메모용지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항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처벌 가능

- 응시자는 배정된 시험시간(사이클) 중에는 시험장에서 퇴장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도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
- 국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
- 시험시간이 출퇴근시간 등과 중복되어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
- 시험문항, 채점표, 채점기준표 및 응시 동영상(실기시험의 안정적 시행 목적의 촬영 영상)은 시험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공지사항 참고\)](#)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자 안내동영상](#)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사이시험 이용 안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편의제공대상자 사례집](#)

□ 필기시험

시험방법

- 필기시험은 지필시험 방식으로 응시자는 배부된 문제지를 받아 OMR카드에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
- 응시자는 시험일 응시자 입장완료시간(시험시간표 참조)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야 하며, 2일간 시험이 진행되는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자는 제1일차 시험에 정상적으로 응시하였더라도, 제2일차 첫 교시(제4교시) 시험에 결시한 경우 이후 시험교시에 응시할 수 없음

필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시작 타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 불가
-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 불가
- 신분증 및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 불가

<신분증의 범위>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만료일 이내),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전화, mp3, 전자사전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아울러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시험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교시 성적을 '0점' 처리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

- OMR답안카드의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연필, 적색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음

답안카드는 전산채점으로 처리되므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연필, 적색펜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 가능(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 불가)
- OMR답안카드에 시험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자 안내동영상](#)

[2018년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공지사항 참고\)](#)

부정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향후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부정행위자의 기준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실기작품 및 그 제작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제지를 보고 자신의 답안카드(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제작)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5.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6. 다른 응시자와 답안카드를 교환하는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카드를 제출하는 행위
 8. 시험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단, 문제지를 공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9. 시험 전·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인쇄물
 -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 마. 기타 정보전달 방법
 10. 시험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11.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12.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3. 시행본부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응시자 준수사항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의료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 의거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 처리

응시자 준수사항의 기준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분증 및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행위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3.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
 4.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5.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제3조 제10호의 물품 제외)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지품을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6.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
 7. 실기시험 시행 중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낙서, 그림, 메모 등의 형태로 종이 등에 적거나 신체에 기록하는 행위
 8. 그 밖에 원장이 정한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
-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은 공개하지 않으며, 필기시험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 공개

기타 유의사항은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

5.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결정방법

의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하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함.

실기시험

의사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 복지부 장관의 고시(2009-106호, 2009.6.9)에 의함.

필기시험

의사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함.

□ 합격자 발표 및 면허(자격)증 교부신청

합격자 발표예정일

(실기)2018.12.21.(금)

(필기)2019.1.24.(목)

합격자 확인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http://www.kuksiwon.or.kr)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http://m.kuksiwon.or.kr)
- 휴대폰 문자(SMS) 통보(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 기재자에 한함)

6. 면허증 발급

□ 면허발급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면허증 발급



면허신청방법

- 우편, 방문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우편 신청은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
- 방문하여 접수하여도 즉시 발급은 불가능
- 보내실곳 : (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고객지원센터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면허(자격)증 발급 진행상황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홈] - [면허·자격 발급] - [면허·자격 발급 진행 상황]에서 확인이 가능

유의사항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관련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면허·자격발급]-[면허·자격 신청서 작성]에서 작성 후 출력
- 자격증 교부 신청서 작성 시 등기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입력

졸업증명서 관련

- 졸업예정증명서 불인정(졸업예정자는 졸업 후 자격증 신청 가능)
- 사본 불인정

의사진단서 관련

-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 없음
-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의사진단서 양식 : 응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검사내용, 검사소견, 진단일,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 및 면허번호
- 의사진단서 유효기간 : 면허교부신청서 도착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본 불인정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관련(합격자 중 해당자에 한함)

- 관련서식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 - 직종‘의사’선택 - [서식모음]
- 사진교체 : 요구서, 신분증 사본, 사진 1매를 방문·우편 제출
- 이름변경 : 개명 시 요구서와 신분증 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개인 정보 변경 내역 반드시 포함)을 방문·우편 제출

결격사유 조회 서류 관련(합격자 중 해당자에 한함)

- 내국인의 경우
 - 등록기준지 확인을 위해 기본증명서를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본증명서를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 서류와 함께 송부
 - 합격 후 1년이 경과하여 면허(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 결격사유를 다시 조회하여야하기 때문에 면허(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기본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음
 - 면허(자격)증 발급 신청 시까지 결격사유 조회가 안 된 경우, 5일 이상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감안하여 신청
- 기본증명서 무료 발급<[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http://efamily.scourt.go.kr)>
- 외국인의 경우
 - 결격사유 조회 제출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 영문일 경우 번역·공증 받지 않고 원본으로 제출 가능하나, 한국어 또는 영어를 제외한 언어로 기재된 서류는 번역·공증 후 제출

국가	발급처	관련서류명	내용
미국	주한미국대사관	AFFIDAVIT	근치산자·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범죄기록 사실유무
캐나다	주한캐나다대사관		
뉴질랜드	주한뉴질랜드대사관		
대만	주한타이페이대사관	성명서	
중국	해당시 공증처	미수형사처분공증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일본	일본경찰청	범죄경력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해당 시청	신분증명서	금치산자·파산선고 사실유무

※ 위 국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1544-4244)로 문의

면허신청 방법 안내

8. 기타

□ 증명서 발급 안내

- 국시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증명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증명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캡처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원본 증명서를 복사할 경우 원본과 구분할 수 있는 복사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인터넷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수령한 기관은 원본확인 메뉴에서 원본의 진위여부를 확인 가능

이용안내

국시원 홈페이지에서는 1999년 하반기 이후 시행한 시험의 응시자에 한해 다음 서비스가 제공

성적 확인 : 과목별 취득 점수 및 평균 점수 확인

전환성적 확인(인턴지원 용)

성적증명서 발급

합격확인서 발급

- * 1999년 상반기 이전 시행한 시험의 응시자는, 방문하시거나 우체국에서 민원우편으로 신청

수수료 안내

열람용 : 과목별 성적, 전환성적 확인(무료)

제출용 : 성적증명서, 합격확인서(1,000원)

- * 고객센터(02-1544-4244)문의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업무시간 이후에는 홈페이지 - 고객상담 - 질의응답(Q&A)메뉴를 이용

□ 답안카드 열람안내

- 답안카드 열람(필기 시험에 한함)은 응시자 본인이 작성한 답안카드에 한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확인 가능
- 응시자의 신속한 답안카드 확인을 위해 답안카드 열람은 희망일 1일 전 13시까지 이메일로 예약 후 열람가능

- 이메일 : exam@kuksiwon.or.kr

- 이메일 기재 내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응시직종② 성명③ 응시번호④ 열람을 원하는 교시⑤ 열람 희망일 및 시간 |
|---|

- 이메일 예약 후 회신을 받은 응시자는 열람 희망일시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국시원 별관 2층 고객지원센터에서 ‘답안카드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신속하게 답안카드 확인이 가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구의역 1번 출구)

시험관리부 (02 - 2251 - 6247)

증명서 발급 안내

□ 응시확인서 안내

- 응시확인서는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는 응시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없으며, 응시확인서 발급은 2011년 이후 시험부터 가능

응시확인서 발급 절차

합격자 발표 전

-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응시확인서 발급 > 발급신청 > 담당자 승인(발급 승인) > 본인 인증 후 발급 완료(출력 가능)

※ 발급 신청부터 출력까지 3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합격자 발표 후

-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응시확인서 발급 > 발급 신청 > 본인 인증 후 발급 완료(출력 가능)

※ 해당 시험의 결시 응시자는 응시확인서 발급이 불가

※ 발급신청과 동시에 완료되어 출력 가능

□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 [의사 국가시험 분석결과](#)

국시원에서는 매년 홈페이지에 직종별 분석 결과를 공지. 국시원 홈페이지 '18.7.25.일자에 게재된 '2017년도 하반기 및 2018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직종별 분석 결과'의 압축파일에 포함된 '2018년도 제82회 의사 국가시험 분석결과'를 확인 가능

2018년도 의사 국가시험 종합 안내서

발행일 2018년 8월

발행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발행인 김창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

1544-4244

www.kuksiwon.or.kr

m.kuksiwon.or.kr

mw@kuksiwon.or.kr